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8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박성훈 · 김위상 · 고동진
박충권 · 김기현 · 서명옥
추경호 · 한지아 · 김도읍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
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
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4년간 연장
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illegible]

[illegible]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u>2027년 1월 1일 이후</u>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 ----- -----202 <u>9년 12월 31일</u>----- ----- ----- ----- ----- ----- ----- ----- ----- ----- ----- 1. <u>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u>----- ----- 2. <u>2031년 1월 1일</u>-----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 ----- ----- ----- ----- ----- ----- -----
--	---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